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거주보장, 법정상한선 5% 범위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 및 75% 이하
(특별공급)의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10년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대조건 일반공급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VS 뉴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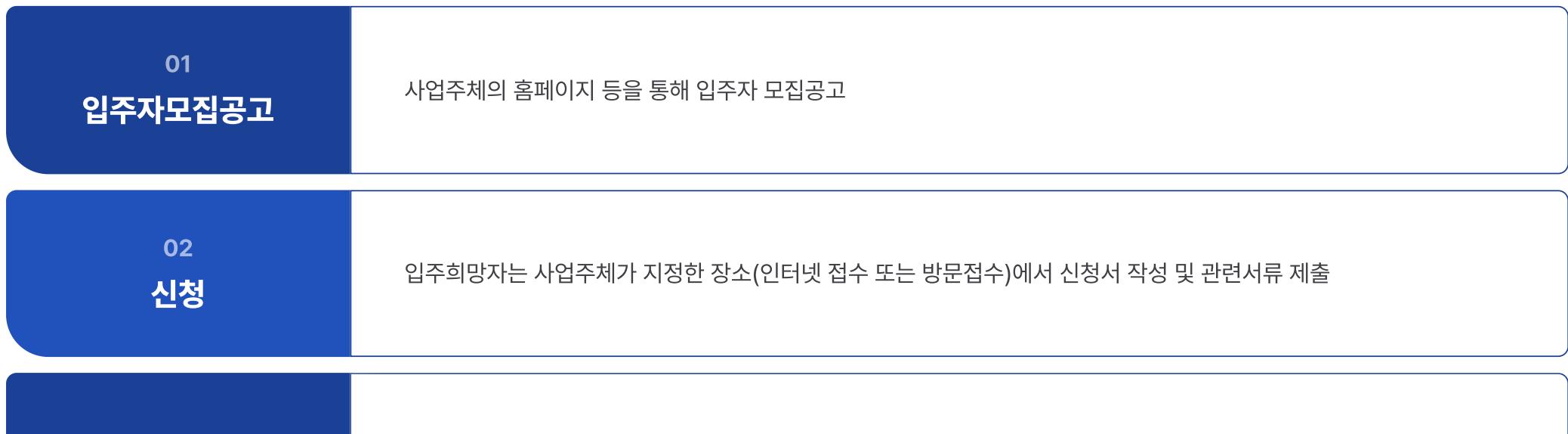
구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NewStay
의무임대기간	10년	8년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5% 제한
초기 임대료	일반 : 시세의 95% 이하 특별 : 시세의 75% 이하	5% 제한

구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NewStay
입주 자격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주거지원계층 : 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 설정	도심, 도시외곽 등 다양
입지 여건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	

입주자격

- **무주택자 우선**
- **공급물량의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신청절차



**0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04
입주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0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및 주거지원계층 소득·나이조건 확인절차 추후 공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세안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홈페이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